

2023학년도 봉서중 학생생활규정전부개정 승인(안)

안 건 번 호	29
------------	----

제출년월일 : 2023. 12. 13.
제 출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정 종 화

I. 제안 이유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
- 봉서중학교-13803(2023.12.05.), 봉서중학교-13428(2023.11.27.), 봉서중학교-4794(2023.11.03.)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 학칙 제·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수렴
- 2023학년도 본교 학생생활 개정심의위원회의 봉의

II. 주요골자

- 생활규정에 대한 봉서중 구성원 전수조사 결과 (교사,학생,학부모).
- 봉서중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진행 절차 상황
- 봉서중 학생생활규정(최종시안)

III. 주요 변경 사항

- 학생 생활규정 전부개정(전라북도 생활규정 개정 지침에 따름)
- 부칙1-물품의 분리보관(수업 중 휴대폰 사용의 원칙)
- 부칙2-징계기준 추가

- 붙임 1. 생활규정에 대한 봉서중 구성원 전수조사 결과 1부.
2. 봉서중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절차 1부.
3. 봉서중 학생생활규정(최종시안) 1부. 끝.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봉서중 구성원 의견수렴

1안						
학년 반	학생찬성	학생 반대	학생 기권	학부모 찬성	학부모 반대	학부모 기권
1학년1반	21	4	0	22	3	0
1학년2반	19	6	0	23	2	0
1학년3반	14	8	3	15	7	3
1학년4반	21	0	4	21	0	4
1학년5반	19	5	1	24	0	1
1학년6반	20	6	0	26	0	0
1학년7반	25	0	0	25	0	0
1학년8반	12	12	0	22	2	0
1학년9반	21	3	0	23	1	0
1학년10반	13	0	11	13	0	11
1학년11반	19	3	2	21	1	2
2학년1반	18	8	0	17	9	0
2학년2반	25	0	0	25	0	0
2학년3반	17	6	2	16	5	4
2학년4반	15	7	5	18	4	5
2학년5반	16	4	6	17	3	6
2학년6반	24	2	0	24	2	0
2학년7반	22	4	0	24	2	0
2학년8반	16	9	0	22	3	0
2학년9반	23	3	0	23	3	0
3학년1반	25	2	0	27	0	0
3학년2반	19	6	1	20	5	1
3학년3반	21	4	2	22	3	2
3학년4반	17	6	4	19	4	4
3학년5반	18	0	9	18	0	9
3학년6반	27	0	0	27	0	0
3학년7반	23	0	4	23	0	4
3학년8반	26	1	0	26	1	0
3학년9반	22	5	0	24	3	0

578 114 54 627 63 56

	총 수	찬성	반대	기권
학생 총 수	746	578	114	54
학부모 총수	746	627	63	56
교직원 총수	69	59	0	10

1561 1264 177 120

찬성률 반대률 기권률

80.97% **11.34%** **7.69%**

2안

학년 반	학생찬성	학생 반대	학생 기권	학부모 찬성	학부모 반대	학부모 기권
1학년1반	22	3	0	23	2	0
1학년2반	16	9	0	23	2	0
1학년3반	12	10	3	14	9	2
1학년4반	21	0	4	21	0	4
1학년5반	18	6	1	24	0	1
1학년6반	18	8	0	25	1	0
1학년7반	22	3	0	22	3	0
1학년8반	14	10	0	23	1	0
1학년9반	21	3	0	22	2	0
1학년10반	13	0	11	13	0	11
1학년11반	19	3	2	20	2	2
2학년1반	14	12	0	17	9	0
2학년2반	25	0	0	25	0	0
2학년3반	17	6	2	15	7	3
2학년4반	14	8	5	19	3	5
2학년5반	16	4	6	17	3	6
2학년6반	18	8	0	18	8	0
2학년7반	22	4	0	24	2	0
2학년8반	15	10	0	22	3	0
2학년9반	22	4	0	22	4	0
3학년1반	25	2	0	27	0	0
3학년2반	20	5	1	21	4	1
3학년3반	21	4	2	22	3	2
3학년4반	13	10	4	17	6	4
3학년5반	18	0	9	18	0	9
3학년6반	27	0	0	27	0	0
3학년7반	23	0	4	23	0	4
3학년8반	27	0	0	27	0	0
3학년9반	21	6	0	23	4	0

554 138 54 614 78 54

총 수	찬성	반대
학생 총 수	554	138
학부모 총수	614	78
교직원 총수	59	0

1561	1227	216
	찬성률	반대률

78.60%	13.84%	7.56%
---------------	---------------	--------------

3안

3학년 학생 성적 분석						
학년 반	학생 찬성	학생 반대	학생 기권	학부모 찬성	학부모 반대	학부모 기권
1학년1반	22	3	0	23	2	0
1학년2반	18	7	0	23	2	0
1학년3반	14	8	3	13	9	3
1학년4반	21	0	4	21	0	4
1학년5반	20	4	1	23	1	1
1학년6반	22	4	0	26	0	0
1학년7반	25	0	0	25	0	0
1학년8반	17	7	0	22	2	0
1학년9반	24	0	0	23	1	0
1학년10반	13	0	11	13	0	11
1학년11반	20	2	2	21	1	2
2학년1반	15	11	0	17	9	0
2학년2반	25	0	0	25	0	0
2학년3반	18	5	2	16	6	3
2학년4반	15	7	5	20	2	5
2학년5반	16	4	6	17	3	6
2학년6반	23	3	0	23	3	0
2학년7반	23	3	0	23	3	0
2학년8반	16	9	0	22	3	0
2학년9반	22	4	0	22	4	0
3학년1반	25	2	0	27	0	0
3학년2반	22	3	1	25	0	1
3학년3반	21	4	2	21	4	2
3학년4반	16	7	4	18	5	4
3학년5반	18	0	9	18	0	9
3학년6반	27	0	0	27	0	0
3학년7반	23	0	4	23	0	4
3학년8반	27	0	0	27	0	0
3학년9반	22	5	0	24	3	0

590 102 54 628 63 55

	총 수	찬성	반대	기권
학생 총 수	746	590	102	54
학부모 총수	746	628	63	55
교직원 총수	69	59	0	10

1561	1277	165	119
찬성률	반대률	기권률	

81.81% **10.57%** **7.62%**

절 차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교생활규정 개정규정심의위원회 구성 ↓2023, 08,25 제 · 개정안 발의 ↓09,07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11,27 12,11 1차 시안 마련 ↓12,12 토론회, 공청회 개최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11,27~12,12) 최종 시안 마련 ↓12,1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12,21 학교생활규정 공포 및 정보 공시 ↓12,22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연수 실시 ↓12, 27 적용 및 환류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 · 개정 제반 사항 추진 11명(교사3명, 학생6명, 학부모2명) ▶ 학교 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1차개정심의(휴대전화등 전자기기 관리, 징계기준 추가 의견수렴) ▶ 설문조사,▶ 전수 또는 표본조사 실시 2차 개정심의 (전면개정, 1차의 내용(휴대 전화 관리,징계기준포함) 서면으로 학교 구성원 전수조사 ▶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초안 작성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공청회를 대신하여 학교 홈페이지, e알리 미,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후 전수조사 병행 ▶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최종시안 학교운영위원회에게 배포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 최종심의 확정 ▶ 학교생활규정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탑재(공포 후 효력발휘) ▶ 학교구성원 대상 학칙 안내 및 연수 1차 안내 (메신저로 안내연수 실시)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분석 2월중 교육과정 워크샵에서 2차 연수 실시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전부개정안)

※ 본 시안은 봉서중학교의 학생,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수정한 최종시안입니다. .

봉서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23. 12. 00

(봉서중학교-00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봉서중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 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4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 제5조(기본행동)**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수업 태도)**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

게 허락을 받는다.

-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 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9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0조(소지 · 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 · 사용을 금지한 물품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등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11조(소지 물품 조사) ①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 · 특정 학년 · 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 · 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전자기기 사용)

- ① 원활한 교육활동 위해 조회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준다.
- ②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 ·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 ·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 · 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 · 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 · 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 · 제10조에 따른 상담 · 제11조에 따른 주의 · 제12조에 따른 훈육 · 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 ·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5일 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5일 2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제19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위원회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22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서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 · 대통령령 · 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무회의 등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무회의,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23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3. 12. 00.>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봉서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2조 관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5조 (수업 중 휴대전화의 사용 원칙) 제13조 전자기기의 사용 (예시) 휴대폰, 태블릿 등 그밖의 전자기기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교사가 지정하는 교실 및 주변장소)	<p>① 원활한 교육활동 위해 조회시간에 휴대폰 또는 전자 기기를 수거하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돌려준다.</p> <p>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③ 교사의 허락하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p>※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p>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p>※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 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위 예시는 학교급별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교직원협의 등을 거쳐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 봉서중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6조 관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수업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2호(수업중 교실 내 지정장소로 이동)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행동성찰문 또는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u>교장실, 교무실 등</u>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행동성찰문 또는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자료가 필요한 경우	<u>교장실, 교무실 등</u>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p>* 출결 관리 : 봉서중학교 출결 관리계획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p>분리학생 분담 지도의 방식 : 분리 조치는 담당 교사의 판단에 따라 경미할 경우 해당 학년 교무실에서 남아있는 교사가 지도를 하고 지도교사가 부재중이거나 또는 사안이 중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인성인권부에서 지도하며 필요할 경우 상담실에서 추가지도함</p>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징계기준(제20조 관련)

구분	행위 내용	종 류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준법	1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3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방해한 학생	●	●		
	4 2회 이상 훈계 지도를 받았으나 개선이 없는 학생	●	●		
	5 선도 기간 중에 훈계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	●		
	6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교내봉사 지도를 받은 학생	●	●	●	
	7 선도기간 중 교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	●	●	
	8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사회봉사 지도를 받은 학생	●	●	●	●
	9 선도기간 중 사회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	●	●	●
	10 교사에 대해 현저히 불손한 언행과 지시에 불응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학생	●	●	●	●
	11 형법상 유죄를 판결을 받았거나 법에 저촉되어 학교 및 지역에 선도 위임된 학생	●	●	●	●
	12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	●	●	●	●
	13 상습적으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3회 이상 적발자)	●	●	●	●
근태	14 무단으로 출결이 불량한 학생	●			
	15 4일 이상 연속적인 무단결석 학생(산발적 결석 5일 이상)	●	●		
	16 3일 이상 무단 가출한 학생	●	●		
	17 8일 이상의 연속적인 무단 결석을 한 학생(산발적 무단결석이 15일 이상인 학생)	●	●	●	
	18 7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	●	●	●	
	19 15일 이상 연속적인 무단결석을 한 학생 (산발적 무단결석이 20일 이상까지)	●	●	●	●
	20 12일 이상 무단가출한 학생	●	●	●	●

	21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수업방해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학생	●	●	●	●
	22	수업 중 학습 분위기를 고의로 흐리게 한 학생	●	●		
	23	고사 중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한 학생 丁	●	●		
수업	24	자신의 행동으로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25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를 선동한 학생	●	●	●	
	26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27	단체 행동 및 수업 거부, 고사기피 선동자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	●	●	●	●
	28	교사의 교육상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			
	29	절도, 음주, 흡연, 도박을 행한 학생	●	●		
	30	교사에게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학생	●	●	●	
생활	31	지켜야할 규칙을 비교적 자주 위반한 경우	●	●		
	32	지켜야할 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학생	●	●	●	●
	33	지켜야할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학생	●	●	●	●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서식 모음]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2] 생활지도 방법

1. “조언”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 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훈육”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 “훈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봉서중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서명)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1/1쪽)

학생 성명							
학년/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자료							

-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념 웨 일

할생 성명

(서명 또는 익)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익)

봉서중학교장 귀하

서식3

○○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예시)

<봉서증학교>

일자	2023. 11. 1. (금)(예시)			특별설 담당자
내용	교시	수업담당교사	확인(서명)	
	1	장00	분리사유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10101 안00(5/1,7/5)
특이사항	1.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보호자님께!

0000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 (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이용)

2023년 00월 00일

봉 서 중 학 교 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 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 1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2		학생과의 관계()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봉서중학교장

서식6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예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흡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미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9-09-25

교워 설명

(서명 또는 인)

봉서중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봉서중학교장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봉서중학교장 귀하

성찰하는 글쓰기

(1/1쪽)

일자	년 월 일 요일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